

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[별표 1의2] <개정 2025. 6. 20.>

자료 요청 대상 기관·단체 및 자료의 범위(제19조의2 관련)

1.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·단체

- 가.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
- 나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54조제1항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61조제1항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1조의2제1항 및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조합으로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
- 다.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
- 라. 「공무원연금법」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
- 마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
- 바. 「국민연금법」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
- 사.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
- 아.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
- 자.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
- 차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
- 카. 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
- 타. 「별정우체국법」 제16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
- 파.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
- 하.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- 거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
- 너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
- 더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
- 러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머. 「지역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
- 버.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 제2조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
- 서.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- 어. 그 밖에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

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·단체

2.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

- 가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구조·구급활동상황 등 화재·재난·재해 관련 자료
- 나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자료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- 다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
- 라.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등 건설근로자의 근로이력에 관한 자료
- 마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7조에 따른 건설사고 통보 자료
- 바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및 같은 조 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
- 사.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8조에 따른 급여, 「국가배상법」에 따른 배상금, 「군인연금법」 제7조에 따른 급여, 「별정우체국법」 제24조에 따른 급여,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33조에 따른 급여, 「선원법」 제94조부터 제101조까지에 따른 재해보상,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 제21조에 따른 보험급여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보상금, 「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」 제10조에 따른 보험금에 관한 자료
- 아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한 자료(공단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채무가 있는 자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)
- 자. 「공탁법」에 따른 공탁물 관련 자료(공단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채무가 있는 자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)
- 차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자료, 같은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자격의 취득·상실에 관한 사항,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,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신청·지급에 관한 자료,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관련 자료,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및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보고·검사 관련 자료
- 카. 「국민연금법」 제6조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자료,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의 취득·상실에 관한 자료,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자료 및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제17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
- 타. 「국세기본법」, 「국세징수법」, 「법인세법」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,

-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과세 및 환급 자료
- 파.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근로계약 및 임금에 관한 자료
- 하.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과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의 거래 내역(공단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채무가 있는 자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)
- 거. 「도로교통법」 제54조제6항에 따른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제85조, 제87조,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 및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·갱신, 적성검사 및 취소·정지에 관한 자료
- 너.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6호·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·상호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험접수 내역과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54조제1항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61조제1항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1조의2제1항 및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조합의 공제금 지급에 관한 자료
- 더.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·건물등기사항증명서, 「선박등기법」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, 「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담보등기부 및 「상업등기법」 및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
- 러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회보장정보
- 머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6조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 원인조사 자료, 같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,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자료 및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자료
- 버.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,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자료(근로·사업소득 원천징수분에 한정한다),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·사업소득(간이)지급명세서,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,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
- 서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면허, 자격 및 행정처분에 대한 자료
- 1) 「약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
  - 2)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 및 「간호법」 제2조에 따른 간호사, 간호조무사

- 3)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
  - 4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
  - 5) 「원자력안전법」 제84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및 방사선취급감독자
- 어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64조제6호에 따라 관리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라 관리하는 신용정보(공단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채무가 있는 자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)
- 저.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 및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등에 관한 자료와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해고, 퇴직 및 고용계약의 중요한 변경 내용에 관한 자료
- 저. 「의료법」, 「약사법」,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진료·조제 기록부, 진료비 계산서 및 세부 산정 내역서·영수증과 본인부담금 수납대장, 약제·치료재료·의료기기 등 요양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자료
- 커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, 「의료급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,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, 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약사, 「의료기기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 및 시설·장비·인력 등의 현황 자료
- 터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,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, 「선박법」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, 「항공안전법」 제11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및 「특허권 등의 등록령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등록원부 및 「농지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
- 퍼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자료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고용·직업에 관한 정보에 관한 자료
- 허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등록,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, 장애인보조기구 지급에 관한 자료
- 고.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자료

- 노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자료 및 「재외국민등록법」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에 관한 자료
- 도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
- 로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(공단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채무가 있는 자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)
- 모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조·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 자료,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 자료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
- 보.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
- 소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도소·소년교도소·구치소,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소년원·소년분류심사원 및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입소·입원·출소 여부, 입소·입원·출소일 및 수용 여부 자료
- 오. 「형법」에 따른 범죄 조사에 관한 서류로서 사건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조. 그 밖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